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38
----------	-------

발의연월일 : 2022. 12. 29.

발의자 : 이용호 · 김승수 · 박정하  
윤한홍 · 이 용 · 이인선  
장동혁 · 조은희 · 최영희  
황보승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2조(「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관하여 제2항에 따라”를 “관하여”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제4항까지”를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문학진흥법」의 개정) 문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2조제3항·제5항 및 이 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문화산업 단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제33조제3항”을 “「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 · 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

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영화 및 비

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

한”을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 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

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9조에 따라 분류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받을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

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

영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54조의 제목 “(등급의 재분류 등)”을 “(등급의 재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50조에 따라 분류받은 등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영상물등급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등급을 다시 분류받을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8조(「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이의신청”을 “제2항에 따른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제4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로 한다.

④ 제3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55조의3제3항 후단 중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5조제3항 · 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4조(「문화진흥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 인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 인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 또는 인가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인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 ~ ③ (생 략) <u>&lt;신 설&gt;</u>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u>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行	개 정 안
<p>제12조(인 · 허가 등의 의제) ①</p> <p>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제11조 제1항부터 <u>제4항까지</u>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 승인 · 협의 · 신고 · 해제 · 동의 · 결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u>관하여</u> 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u>대하여는</u>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1. ~ 26. (생 략)</p> <p>② 문화재청장,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지구에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할 때 그 사업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군사기지 및</p>	<p>제12조(인 · 허가 등의 의제) ① -</p> <p>-----</p> <p>-----</p> <p>----- <u>제4항까지의 규정</u> -----</p> <p>-----</p> <p>-----</p> <p>-----</p> <p>-----</p> <p>----- <u>관하</u></p> <p><u>역</u> -----</p> <p>-----</p> <p>-----</p> <p>-----</p> <p>----- <u>대해서는</u> -----</p> <p>-----.</p> <p>1. ~ 26.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  
른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을 포함한다)과 사전협의를 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내용이 관계 법률에 부적합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공익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제  
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업시행  
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  
의(사실상의 협의를 포함한다)  
가 있은 경우에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아  
니하더라도 그 필요한 협의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제11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를 할 수 있다.

### <신 설>

### <삭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

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 인가등의 의제)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 인가등의 의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2조제3항 · 제5항 및 이</u> <u>조 제1항 · 제2항에서 규정한 사</u> <u>항 외에 허가 · 인가등 의제의</u> <u>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u> <u>「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u> <u>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인 · 허가 등의 의제) ①</p> <p>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 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u>다음 각 호의 허가</u>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 9. (생 략)          ② (생 략)</p> <p>&lt;신 설&gt;</p>	<p>제28조(인 · 허가 등의 의제) ① -</p> <p>-----</p> <p>-----</p> <p>----- 문화산업</p> <p><u>단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u> --</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p>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아니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 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설>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 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 광주광역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제33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 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

<삭제>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 기간과 만료시 조치) ① -----

----- 「행정기본법」 제24조 제4항-----

-----

-----

-----.

-----

-----

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u></p> <p><u>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u></p> <p><u>②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u></p>	<p><u>제21조(허가등의 의제) ① 제20조</u></p> <p><u>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면,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u></p> <p><u>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시 ·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 · 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 · 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시 · 도지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 · 허가 의제 협의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 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p> <p>②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청의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31조(상영등급의 재분류) ① 제29조에 따라 분류받은 상영등급에 이의가 있는 영화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받을 수 있다.</p> <p>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영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방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 ----- --.</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p>

제54조(등급의 재분류 등)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방법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54조(등급의 재분류) ① 제50조에 따라 분류받은 등급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등급을 다시 분류받을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급을 다시 분류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 필요한 -----  
-----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 ② (생 략)</p> <p><u>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자는 반려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u></p> <p><u>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⑤ 위원회는 <u>이의신청</u>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4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u></p> <p>⑥ ~ ⑧ (생 략)</p>	<p>제55조(등록의 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④ 제3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u></p> <p><u>③ ----- 제2항에 따른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u> ----- ----- ----- <u>-----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u></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① · ② (생 략)</p> <p>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에 그 등록을 신청한</p>	<p>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u>제55 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u> 및 제8 항을 준용한다.</p> <p>④ · ⑤ (생 략)</p>	<p>-----. -- ----- <u>제55 조제3항 · 제4항</u>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	---